

[한국실업축구연맹 선수 관리 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이 시행 규칙은 한국실업축구연맹 선수 관리 규정(이하 "규정")이라 명한다.

제 2 조 [목적]

이 규칙은 한국실업축구연맹(이하 "연맹")에 등록하는 모든 선수를 대상으로 하며, 연맹 축구 선수로 구성된 단체(이하 "구단")의 선수 관리를 원활히 하고, 연맹 선수 계약에 의한 등록 및 이적의 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적용]

이 규칙은 연맹에 등록되었거나 등록하고자 하는 모든 코칭 스태프(감독, 코치) 및 선수에게 적용되며, 본 규정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FIFA, 대한축구협회, 연맹의 규정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제 2 장 선수 계약

제 4 조 [계약서]

각 구단과 선수 간에 체결되는 선수 계약은 연맹이 정한 한국실업축구연맹 축구 선수 고용 계약서(이하 "통일 계약서")에 의한다.

제 5 조 [계약 방법 및 계약서 보관]

① 구단과 선수간의 입단 계약 또는 연봉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해당 구단 대표자(또는 위임받은 담당자)와 해당 선수(대리인이 있을 경우에는 대리인도 포함)가 직접 대면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선수가 민법상 미성년자일 경우 법정대리인(또는 법정후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이때 법정대리인은 부(父) • 모(母) 모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1) 선수대리인이라 함은 부모, 형제, 변호사, 대한축구협회(이하 "협회")에 등록된 중개인만으로 제한하며, 이들만이 선수대리인 자격으로 구단과 계약을 위한 협상과 계약을 할 수 있다.

② 상기 ①항에 의하여 체결된 계약서는 정본 3부를 작성하여 연맹의 승인을 받으며, 해당 선수, 해당 구단, 연맹이 각 1부씩 보관한다.

제 6 조 [계약 기간 및 연봉]

① 계약 기간은 구단과 선수간의 합의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단, 최소 계약 기간은 6개월로 하며, 모든 계약은 최종 계약 연도의 12월 말일에 종료되어야 한다.

② 연봉은 통일 계약서상에 기재된 기본급연액과 수당(출전급, 승리급, 포상금 등)을 모두

합한 것으로 구단과 선수 간 합의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또한 모든 연봉은 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명시된 내용만이 인정된다. 단, 선수의 최저 기본급은 2,000만원(2018년 기준)으로 하며, 법정최저임금의 상승에 따라 최저 기본급은 상향된다.

③ 병무기간(군/경 입대)으로 인한 기간은 계약기간에서 자동 제외된다.

④ 구단이 선수에게 지급해야하는 연봉금전(통일계약서 상에 지급하기로 한 제반 금전)을 체불한 경우, 연맹은 상벌위원회를 통해 해당 구단을 징계할 수 있다.

제 7 조 [계약 갱신 및 수정]

계약 기간 중 또는 계약 만료 후 양자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갱신 및 수정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도 반드시 본 규칙 제5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 8 조 [계약의 발효]

구단과 선수간의 체결한 계약은 연맹이 승인하고 공시한 날부터 효력이 있다.

제 9 조 [특약 조항]

계약서의 표준조항은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더라도 이를 변경할 수 없다. 다만 계약과 관련된 제반 규정 및 조항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서에 특약 조항(기타부분)을 기재하여 설정할 수 있다.

제 10 조 [공식 명칭과 서명]

구단과 선수 간의 계약 체결시 구단의 공식 명칭과 서명은 연맹에 등록되어 있는 구단과 대표자의 서명으로 하고, 선수 및 선수대리인은 본인의 서명으로 하여야 한다.

제 11 조 [계약의 승인 신청]

① 계약을 체결한 구단은 연맹에 계약서를 제출하여 선수 계약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소속 선수와 종전의 계약내용을 변경하여 재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대한 승인신청은 계약종료 전일까지 할 수 있다.

③ 상기 ①항의 승인 신청을 접수한 연맹은 이의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계약을 승인하고,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제 12 조 [등록]

① 연맹에 등록하고자 하는 선수 및 코칭스태프는 연맹의 정한 기준에 부합되는 자료를 반드시 제출하여야만 한다.

② 구단별 등록 선수는 최소 20명이며 이중 외국인 선수는 최대 3명(GK불가)으로 한다.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재외국민선수가 입단할 경우 국내 선수로 간주한다.

③ 등록기간은 정기등록기간과 추가등록기간으로 구분되고, 연맹은 등록기간을 정하여 구단에 공지한다. 등록기간은 매년 변경될 수 있다.

④ 정기등록기간은 매년 1월부터 최대 12주 이내로 모든 선수는 이 기간에 등록하여야 한다. 추가등록기간은 최대 4주(또는 30일) 이내로 한다.

⑤ 해외리그에서 영입되는 선수의 ITC 신청은 선수등록 마감일까지 완료되어야 하며, 해

당 선수는 ITC가 연맹에 접수되고 등록공시가 완료된 후 공식경기에 출전할 수 있다.

⑥ 병역의무 중인 자는 내셔널리그 선수등록을 할 수 없다.

⑦ 코칭스태프(감독, 코치, GK코치, 피지컬코치)와 팀스태프는 정해진 기간까지 등록하여야 한다. 단, 1일전이 주말 또는 법정공휴일인 경우에는 주말 또는 법정공휴일 전일까지로 한다.

1) 코칭스태프(피지컬코치 제외)는 KFA1급 또는 AFC A급 이상의 지도자 자격증을 반드시 보유하여야 한다. 피지컬코치의 경우, 관련 자격증을 보유하여야 하며, 등록 여부는 연맹의 판단에 의한다.

2) 팀스태프는 팀매니저, 주무, 통역, 주치의, 의무트레이너(물리치료사, 재활트레이너 포함), 스카우터, 전력분석관, 장비담당관 등이 등록 가능하며, 의무트레이너(물리치료사, 재활트레이너 포함)의 경우 연맹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3) 공식경기 중 (그라운드 사전 훈련 ~ 경기 종료 시까지) 기술지역 및 벤치의 출입은 등록된 코칭스태프와 팀스태프(스카우터, 전력분석관, 장비담당자 제외)만이 가능하다. 경기 중 선수 지도행위는 코칭스태프만이 가능하며, 피지컬코치는 사전 훈련 및 하프타임 워밍업 시에만 선수 지도가 가능하다.

4) 시즌 중 변경되는 코칭스태프와 팀스태프는 연중 수시로 등록이 가능하며, 최종 등록 승인 여부는 연맹이 결정한다. 등록방법은 협회 JOINKFA 등록 절차를 따른다.

제 13 조 [군 입대 선수]

① 선수가 계약 기간 중에 군(軍)/경(警)에 입대할 경우, 전역 즉시 복귀를 조건부로 선수계약이 자동 정지된다. 이 경우 해당 선수는 계약 정지 기간 중에 입대한 군/경 팀의 선수로서 제반 활동을 할 수 있다.

② 상기 ①항의 선수가 전역시, 소속 구단은 입대 당시 계약서를 기준으로 전역 즉시 등록하여야 한다. 단, 구단과 선수가 종전의 계약을 변경하여 재계약하였을 경우에는, 새로운 계약서를 기준으로 등록할 수 있다.

제 14 조 [자유 계약 선수]

① 선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소속 구단에 자유 계약 선수 신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유 계약 선수로 공시된 선수는 공시일로부터 어느 구단과도 자유로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동일 등록기간 내, 자유계약선수로 공시된 구단으로 재등록은 불가하다.

1) 구단과 선수의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될 경우

2) 계약기간이 종료되었더라도 연맹 규정에 의해 구단의 보유선수로 관주되는 선수의 보유원을 포기할 경우

② 구단이 보유 중인 소속 선수와 계약을 해지(선수 보유권 포기)하고자 할 경우 양자 간 합의를 통해 자유 계약 선수 공시를 요청(계약 해지 합의서 제출)할 수 있으며, 계약 종료기간까지의 잔여 급여는 양자 합의에 따른다.

③ 구단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이 해지될 경우, 구단은 본 계약에 정한 잔여 기본급연액을 선수에게 지급하며, 선수의 귀책사유로 인해 본 계약이 해지될 경우 구단은 계약 해지일이 속한 월(이하 "당해 월")의 기본급연액을 지난달의 기본급연액 지급일의 다음날로부

터 당해 월의 계약 해지일까지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 15 조 [임의 탈퇴 선수]

- ① 구단은 보유선수가 제반규정 또는 계약서에 명시된 조항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임의탈퇴선수 공시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구단은 임의탈퇴 공시요청 시 사전에 해당선수에게 이를 통지하고, 공문을 통해 임의탈퇴사유 및 제반 자료를 동반하여 연맹에 탈퇴 신청을 진행한다. 연맹은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임의탈퇴 여부를 결정한다.
- ③ 연맹은 구단과 선수에게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구단의 임의탈퇴 공시요청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임의탈퇴선수로 공시한다.
- ④ 구단이 임의탈퇴선수를 복귀시키고자 할 경우, 임의탈퇴선수 공시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에 연맹에 임의탈퇴 철회 신청을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⑤ 임의탈퇴복귀 선수는 연맹의 복귀 공시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소속 구단으로 복귀하여야 한다. 만일 해당 선수가 소속 구단으로 등록을 거부할 경우, 재차 임의탈퇴선수로 공시한다.
- ⑥ 임의탈퇴 선수는 공시일로부터 복귀할 때까지 계약서에 정의한 모든 선수활동과 비선수활동이 정지되며, 연봉은 지급되지 않는다. 또한 임의탈퇴 기간 중 원소속 구단과의 계약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원소속 구단이 임의탈퇴를 철회하지 않는 경우, 국내 어느 구단과도 계약 및 등록이 불가능하다.

제 16 조 [실격 선수 및 코칭스텝, 관계자]

연맹은 제반 규정 위반 또는 법적, 사회적 물의를 발생시켜 내셔널리그 선수로서의 품위와 자격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 자에 대해 실격 선수(코칭스텝, 관계자 포함)로 간주하여, 무기한 활동 제한(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제 17 조 [이의신청 및 활동 제한]

- ① 구단이 타 구단의 선수 계약에 이의가 있을 경우, 해당 선수의 등록 공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연맹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 ② 연맹은 선수 계약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 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해당 선수의 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
- ③ 연맹은 상기 ②항의 규정에 이의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해당 선수 또는 피해를 입은 구단의 요청에 따라 무고한 이의를 신청한 구단을 상대로 응분의 보상을 제시하는 등 적절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
- ④ 선수는 소속 구단의 승인을 얻었을 경우, 다른 직업을 겸업할 수 있다.

제 18 조 [위반 처분]

- ① 구단과 선수가 본 규정을 위반하여 체결한 계약은 무효이며, 그 계약을 체결한 해당클럽(관련 임직원 포함)과 선수는 상벌위원회에 회부되어 처벌한다.
- ② 상기 ①항의 위반행위를 행한 구단은 해당 선수와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 ③ 구단과 선수가 FA제도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연맹 상벌위원회에 회부된다.

제 19 조 [이중 또는 이면 계약 금지 및 제재 조항]

① 구단과 선수 간의 계약 체결은 연맹에 최초 접수된 계약서만을 인정하며, 이중(이면) 계약 사실이 발각될 경우 연맹 상벌위원회에 회부된다.

제 3 장 FA제도

제 20 조 [FA선수 자격 취득]

FA선수 자격은 한 구단에서 계약기간이 만료된 선수에 한한다.

제 21 조 [권리 행사]

- ① 구단은 시즌 종료 후 연맹이 공시를 요청하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소속 선수 중 다음 연도 FA자격 취득 선수를 연맹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연맹은 각 구단이 통보한 다음 연도 FA자격 취득 선수 명단을 검토하고, 이의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또한 기존 FA자격 취득자 중 미계약 FA선수도 다음 연도 FA자격 취득 선수와 같이 공시된다.

제 22 조 [교섭 기간]

FA선수는 연맹의 FA공시가 이뤄진 이후에는 원소속 구단을 포함한 전체 구단과 입단 교섭을 할 수 있다.

제 23 조 [이적료]

- ① 이적료의 발생은 내셔널리그 구단 간의 이적에만 적용된다.
- ② FA 및 자유계약선수(방출선수 등)를 제외한 모든 선수 이적시에는 이적료가 발생한다. 이때 이적료는 소속구단의 연봉의 50%를 지급하여야 한다. 단 이적료에 산정 되는 연봉은 통일계약서에 명시된 선수의 순수한 기본급연액만을 의미하며, 각 종 수당은 포함하지 않는다.
- ③ 선수 이적시 양도 구단은 단체장의 직인이 들어간 문서로 연맹에 통보하여야 하고, 연맹이 이를 확인 후 공시하면 이적이 완료된 것으로 본다.
- ④ 선수 이적 이후 양도, 양수 구단 간의 이적료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적(양수)구단은 해당 선수의 실제 연봉에 대한 근거를 확인하기 위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만일, 차액이 발생할 경우 이적(양수)구단은 차액의 2배를 위약금으로 원 소속 구단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 24 조 [사전 교섭에 대한 제재]

FA자격 취득 선수에 대해 교섭 기간을 위반하거나 사전 접촉 등을 하였을 경우, 물의를 발생시킨 구단 및 선수에게 연맹 상벌위원회에 회부하여 제재한다.

부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 2 조 [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제축구연맹(FIFA), 아시아축구연맹(AFC), 대한축구협회 규정을 준용한다.